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 노을연료전지 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 노을연료전지 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 노을연료전지 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주)하나은행의 본·지점 등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7년 02월 0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12월 0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총액 : 11,400,000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2017년 02월 27일부터 2017년 03월 20일까지

   ※ 모집예정금액이 조기에 모두 판매되는 경우 모집이 조기 마감되며, 마감일 익영업일에 이 투자신탁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칸서스자산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의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폐쇄형)**으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하고 있으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8.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의 특성과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지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회계 결산을 통해 매1년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입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대출채권 채무자의 사업성과 등 영업환경과 신용도, 다양한 경제변수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또는 지급중단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려고 하는 주요 투자대상자산은 (주)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입니다. (주)하나은행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입니다. (주)하나은행은 대출채권 보유자 이면서 판매회사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주)하나은행이 대출채권 매도시점에 대출채권이 상환 되지 않을 위험을 알고도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매각하고 다시 판매회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관련 위험을 전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채무자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대금, 열판매대금 등을 고려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농협은행(주)와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통하여 상환위험을 감소 시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대출채권을 매입 할 예정입니다.

목차

※ 요약정보 - 간이투자설명서.....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14
3. 모집(판매)예정금액.....1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14
5. 인수에 관한 사항.....1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15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1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16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16
4. 집합투자업자.....16
5. 투자운용인력.....1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17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17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1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1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26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32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32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3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35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37
1. 재무정보.....3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37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37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8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40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40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40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41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41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42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4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44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45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48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사항.....49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49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50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7.02.02.)
칸서스 노을연료전지 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 (펀드 코드:BL764)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칸서스 노을연료전지 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채권은 채무자의 재무상황, 신용상태, 영업환경 등에 따라 원리금회수가 결정되므로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며, 부도 등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특별자산형, 폐쇄형(중도환매불가능), 단위형		
집합투자업자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02-2077-5000)		
모집(판매) 기간	**2017년 02월 27일부터 2017년 03월 20일까지 (단, 모집예정금액이 조기에 모두 판매되는 경우 모집이 조기 마감되며, 마감일 익영업일에 이 투자신탁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1,400,000좌) 1인당 모집금액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효력발생일	2019년 12월 06일	**존속 기간**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다만,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유한 자산의 전부가 매각 또는 상환되는 경우에는 매각대

			금 또는 상환대금이 회수되는 날의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판매회사	(주)하나은행의 본·지점 등 영업점		

종류(Class)		-
가입자격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운용	0.31
	판매	0.33
	신탁	0.04
	일반사무	0.02
	기타	-
	총보수·비용	0.70
※ 주석사항		(주1) 상기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 회계기간 종료후 혹은 해지시 후급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 적용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환매 방법	이 투자신탁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가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채권은 채무자의 재무상황, 신용상태, 영업환경 등에 따라 원리금회수가 결정되므로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며, 부도 등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대출채권**	**70%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2	채권	3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노을그린에너지㈜'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을 채권, 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인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인 '노을그린에너지㈜'에의 대출채권에 투자합니다.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노을주차장 인접) 일대 부지에 2.5MW급 연료전지 8기로 구성된 총 2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과 열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노을그린에너지㈜'는 2016.06.15 체결한 대출약정을 통해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금은 약 121,900백만원이며, 이 투자신탁은 기존에 참여 중인 투자자의 일원인 ㈜하나은행이 '노을그린에너지㈜'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 중에서 114억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본 사업의 재원조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매입할 대출채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출채권 개요]

구분	내용
채무자	노을그린에너지㈜
대출채권의 만기예정일	2020.02.24.

대출금리	연 4.285% (고정금리)
이자지급 예정일	매년 12월 26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시기	대출채권의 만기일에 상환(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상환)
담보권 설정	본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설정된 아래의 채권보전장치를 (주)하나은행(대출채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을 예정 - 아 래 - • 사업시행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근질권 • 사업시행법인 보유 예금에 대한 근질권 • 사업시행법인 가입 보험에 대한 근질권 • 사업시행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상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 사업시행법인 소유 발전설비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 전략적출자자(한국수력원자력,포스코에너지,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에서 대주단 앞으로 출자자약정 제출

한편,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대금, 열판매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기간 동안 대출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노을그린에너지(주)}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협은행(주)와 대출채권 매입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출채권 매입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출채권 매입 약정]

구분	내용
계약서 명칭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계약당사자	• 양도인 : (주)국민은행(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 양수인 : 농협은행(주) • 차주 : 노을그린에너지(주)
약정체결일자(예정)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 당일(2017년 3월 21일 예상)
거래 대상 자산	양도인이 대출약정에 따라 취득한 Tranche II 대출금 114억원에 대한 대출채권(양도거래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잔액에 한함), 이하 "양도대상대출금"이라고 함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 조건	• 차주가 양도대상대출금에 대해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양도대상대출금의 상환일 이전에 대출약정서에 따라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차주가 대출약정서에 따라 상환일에 양도대상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에 대한 설명

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비교지수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비교지수의 기재

를 생략하였으며, 투자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운용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기준일:2019.11.28)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인력	조동철	1972	인프라운용 본부장	53개	24,460억
부책임운용인력	하승호	1979	인프라운용 부장	25개	11,231억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대출채권 포함), 단기금융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의 주요 계약당사자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대출채권 포함)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불능 또는 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주)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1년 마다 결산을 통해 이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을그린에너지(주)의 대내외적인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금흐름의 악화, 과세당국에 의한 세금 발생 및 (혹은) 시설의 물리적 파손 등으로 인해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및 관리운영사 신용위험	시공사이자 관리운영사인 포스코에너지(주)는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상 의무 및 '장기 서비스 계약서'상 의무, 그리고 하자 담보 및 전기출력량, 연료소모량, 열 출력량에 대한 보증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 또는 목표예상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수행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각종 사유(사업자 귀책, 정치적 및 비정치적 불가항력, 정부귀책 등)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가 해지되는 경우 또는 각종 사유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의 계약당사자 등이 파산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채권은 조기에 상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법률적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의 주요 사업은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주)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므로 채무자의 영업 등에 관련된 법규, 세제 등의 변화가 분배금 및 원금 지급 재원이 되는 전력판매매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매출, 열판매매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로 인해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본 사업 진행을 위한 허가와 승인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거나 취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허가 및 승인 취소 등 관련 중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포스코에너지(주) 등과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이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는 계약 금액에 대하여 확정가격으로 체결되었으나, 건설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영개시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포스코에너지(주) 등과의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를 통해 준공후검사 등을 실시한 후 최종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나, 해당 업무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운영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증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포스코에너지(주)와 확정가액으로 5년 단위로 사업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한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장기 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만약 포스코에너지(주)가 여하한 사유로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체 관리운영사를 선임하게 되면 당초 책정된 서비스

	대가보다 초과된 가격으로 '장기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이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할 위험은 있습니다.
연료공급 위험	본 사업 연료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주)는 약 30년간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본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와 '도시가스 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서상 공급자(서울도시가스(주))의 귀책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하였으나, 그럼에도 발전소에 연료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된 연료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연료비 가격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운영하는 연료전지 발전소에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향후 LNG가격의 상승 또는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술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를 통해 포스코에너지(주)로 하여금 연료전지 설비에 대해 각 부문별 평균적으로 약 3.5년간(주기기 기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료전지 설비의 성능이 예상보다 낮게 발생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환경 및 민원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운영하는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 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발생 등에 따른 환경 규제 및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운영기간 발전량 감소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량(전기출력량, 연료소모량, 열 출력량)에 대해 포스코에너지(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만약 실제 발전량이 극히 적은 상황이 지속되거나, 포스코에너지(주)에서 해당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수입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미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지급단가를 산정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매수인인 한국수력원자력(주)(58%), 한국지역난방공사(32%) 및 포스코에너지(주)(10%)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매도할 계획이나, 매수인들의 신용 위험 발생 등의 사유로 매수인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은 존속합니다. 또한, '열수급계약서'를 체결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용 위험 등의 사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해당 계약을 미이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주)와 '도시가스 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신용위험 발생 등의 사유로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주)와 체결한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 및 '장기 서비스 계약서' 관련하여서도 향후 신용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포스코에너지(주)에서 해당 계약을 미이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력구매가격 및 열구매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구매가격인 SMP가 사업계획보다 하락할 경우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채무자에게 지불하는 열구매가격이 사업계획보다 하락할 경우 채무자의 매출이 하락할 위험이 발생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지급단가에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매매대금을 통해 최대한 보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한 발전량 감소위험 및 계약미이행위험 등으로 인하여 전력구매가격 및 열구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출 하락 위험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사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업부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상 사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매입약정 체결 은행의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협은행(주)와 대출채권 매입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만약 농협은행(주)의 신용도가 추후 하락하거나, 매입 약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이 상환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이 영위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시설물 등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상당수의 위험은 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를 경감시키지만, 보험을 통하여 보장되지 않는 리스크에 의해 시설물이 일부, 혹은 전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및 상환연기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기간 만기 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자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없거나 상환되지 못하면 투자신탁이 상환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년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화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매년 단위로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결국 만기 시점에 투자자가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만기에 일시로 분배금과 상환금을 지급받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매년 분배하는 분배금은 예금의 이자와 다르며,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AAA(2017.1월 기준)인 농협은행(주)가 대출채권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위험등급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위험등급분류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 정기결산 또는 임시결산을 통해 이익분배금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을그린에너지주식회사의 대내외적인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금흐름의 악화, 과세당국에 의한 세금 발생 및(혹은) 시설의 물

리적 파손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편입하려고 하는 주요 투자대상자산은 (주)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입니다. (주)하나은행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입니다. (주)하나은행은 대출채권 보유자 이면서 판매회사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주)하나은행이 대출채권 매도시점에 대출채권이 상환 되지 않을 위험을 알고도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매각하고 다시 판매회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관련 위험을 전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채무자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대금, 열판매대금 등을 고려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농협은행(주)과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통하여 상환위험을 감소 시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대출채권을 매입 할 예정입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칸서스 노을연료전지 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	BL76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특별자산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폐쇄형(환매가 불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1,400,000좌(114억원 상당금액, 1좌당 1,000원)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판매단위는 1좌입니다. 이 투자신탁 규모의 제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인당 투자금액 한도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모집(판매) 예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보다 매우 작은 경우 설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모집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으로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금액이 조기에 모두 판매되는 경우 모집이 조기 마감되며, 그 마감일의 익영업일에 이 투자신탁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2017년 02월 27일부터 2017년 03월 20일까지
모집(판매)장소	(주)하나은행의 본·지점 등 영업점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주)하나은행의 영업일에 (주)하나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의 상장 :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장규정 요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투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함으로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하고 있으나, 상장된 당해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 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이상일 것
(2) 발행요건 : 당해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3) 1좌당 원본액 : 500원 이상일 것

다. 상장폐지요건

(1)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미만이 되어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액 환매 등이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칸서스 노을연료전지 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	BL76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17.02.28.	최초 설정(예정)
2019.12.06	운용전문인력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유한 자산의 전부가 매각 또는 상환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상환대금이 회수되는 날의 익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8층 ☏ 02-2077-50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2019.11.28)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인력	조동철	1972	인프라운용 본부장	53개	24,460억	현대산업개발 SOC팀(9년3개월) 엠코 SOC팀(0년8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인프라운용팀(12년10개월)
부책임운용인력	하승호	1979	인프라운용 부장	25개	11,231억	한국씨엠아이티컨설팅CM사업부(2년) 중앙대 건설경영정보연구실(2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인프라운용팀(11년8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프라운용1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수희	2017.02.28 - 2018.12.06
	조동철	2018.12.06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조동철	2017.02.28 - 2018.12.06
	하승호	2018.12.06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특별자산형, 폐쇄형, 단위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채권은 채무자의 재무상황, 신용상태, 영업환경 등에 따라 원리금회수가 결정되므로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며, 부도 등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대출채권	70%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2	채권	3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

			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4	단기대출	-	법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합니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6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은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유예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법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계열회사 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채권은 채무자의 재무상황, 신용상태, 영업환경 등에 따라 원리금회수가 결정되므로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며, 부도 등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노을그린에너지㈜'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을 채권, 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인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인 '노을그린에너지㈜'에의 대출채권에 투자합니다.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노을주차장 인접) 일대 부지에 2.5MW급 연료전지 8기로 구성된 총 2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

과 열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노을그린에너지㈜'는 2016.06.15 체결한 대출약정을 통해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금은 약 121,900백만원이며, 이 투자신탁은 기존에 참여 중인 투자자의 일원인 ㈜하나은행이 '노을그린에너지㈜'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 중에서 114억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본 사업의 재원조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대출채권의 편입은 이 투자신탁이 채무자, 그리고 대출채권매도인{(주)하나은행}간 체결하는 대출채권매매계약에 의해 이 투자신탁이 대출채권매매대금을 대출채권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채권매도인으로부터 대출채권 및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받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출채권 개요]

구분	내용
채무자	노을그린에너지㈜
대출채권의 만기예정일	2020.02.24.
대출금리	연 4.285% (고정금리)
이자지급 예정일	매년 12월 26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시기	대출채권의 만기일에 상환(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상환)
담보권 설정	본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설정된 아래의 채권보전장치를 (주)하나은행(대출채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을 예정 - 아 래 - • 사업시행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근질권 • 사업시행법인 보유 예금에 대한 근질권 • 사업시행법인 가입 보험에 대한 근질권 • 사업시행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상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 사업시행법인 소유 발전설비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 전략적출자자(한국수력원자력,포스코에너지,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에서 대주단 앞으로 출자자약정 제출

※ 대출금리는 이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목표이익분배율과는 다른 것으로, 투자신탁이 수취하는 대출채권의 이자 등의 수입에서 이 투자신탁 운용에 필요한 보수 및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됩니다.

※ 투자원금은 대출채권의 만기시 투자신탁으로 지급되며, 이러한 경우 투자신탁은 사전에 명기된 신탁계약기간보다 조기에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게 되어 그 익영업일에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 여하한 사유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채권이 조기에 상환되는 경우, 투자자는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원리금을 회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대금, 열판매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기간 동안 대출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하나은행이 114억원 대출채권에 대하여 상기 표에 따라 대출채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차주인 노을그린에너지(주)로부터 조건변경수수료 120,000,000원을 수취하기로 하였으나, (주)하나은행은 해당 대출채권을 이 투자신탁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는 (주)

하나은행이 114억원 대출채권의 양도와 함께 상기 조건변경수수료의 수취 권한까지 이 투자신탁에 양도하기로 (주)하나은행과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그 설정기간 동안 차주로부터 수취할 114억원에 대한 대출이자와 조건변경수수료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비용(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등)을 충당하고, 남은 재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①투자대상 대출채권의 채무자인 '노을그린에너지(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하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월드컵공원 내 노을주차장 인근 지역, 아래 "사업지 개요"부분 참고) 일대 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 관련 매출 및 농협은행(주)와의 대출채권 매입 약정 등을 통해 당해 대출채권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②이자 및 원금의 재원인 전력 관련 매출은 전력판매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동안 전량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할 계획입니다.[주)]

주) 본 사업은 2016년말까지 건설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법인의 본격적인 매출은 발전소의 운영이 개시되는 2017년도부터 발생하며, 운영기간(2017.01.01~2036.12.31으로 가정하여 20년간) 매출은 연평균 약 43,508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출처 : 삼정KPMG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전력판매: 한국전력거래소에 도매시장가(SMP)로 판매
- 열판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수급계약서'에 따른 열구매가격(열요금단가 등의 요금)으로 판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 포스코에너지(주)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사업의 발전설비 운영 종료시(운영개시일로부터 약 20년 후)까지 매월마다 발전소에 필요한 운영비와 대출원리금 등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발생한 전력판매매출 및 열판매매출을 차감한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지급단가를 정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판매함으로써, 전력판매매출 및 열판매매출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시행법인의 운영비와 대출원리금 등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매출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 감소 요인 중 포스코에너지(주)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전기출력량, 연료소모량, 열출력량의 보증량 대비 미달분)은 포스코에너지(주)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보증 한도(해당 업체가 수령하는 서비스대가의 90%)가 소진된 경우, 실제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지급단가에 반영하게 하였고 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매출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③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대출채권의 만기 시점에 채무자의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농협은행(주)와 대출채권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농협은행(주)에게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 투자신탁이 농협은행(주)에게 대출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만기보다 조기에 투자원리금이 상환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채권 매입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출채권 매입 약정]

구분	내용
계약서 명칭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계약당사자	• 양도인 : (주)국민은행(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 양수인 : 농협은행(주) • 차주 : 노을그린에너지(주)
약정체결일자(예정)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 당일(2017년 3월 21일 예상)
거래 대상 자산	양도인이 대출약정에 따라 취득한 Tranche II 대출금 114억원에 대한 대출채권(양도거래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잔액에 한함), 이하 “양도대상대출금”이라고 함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 조건	• 차주가 양도대상대출금에 대해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양도대상대출금의 상환일 이전에 대출약정서에 따라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차주가 대출약정서에 따라 상환일에 양도대상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노을그린에너지(주) 소개]

구분	내용
회사명	노을그린에너지㈜
대표자	조경석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2 (상암동)
설립일	2014. 07. 25
법인등록번호	110111-5476274
사업자등록번호	105-88-07174
업태(종목)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연료전지발전소)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열공급)
주요 계약(기체결완료)	•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계약상대자: 포스코에너지(주), (주)경민건축사사무소, (주)동진, (주)우원씨앤아이) • 장기 서비스 계약서(계약상대자: 포스코에너지(주)) • 도시가스 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서(계약상대자: 서울도시가스(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계약상대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주)) • 열수급계약서(계약상대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대출약정서(계약상대자: (주)하나은행, (주)케이티캐피탈→(주)애큐온캐피탈로 사명 변경, 하나금융투자(주)) • 대출채권양수도계약서(계약상대자: (주)하나은행, (주)케이티캐피탈→(주)애큐온캐피탈로 사명 변경, (주)하나은행(‘칸서스연료전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로서)) • 주주협약 변경약정서(계약상대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주), 서울도시가스(주), (주)하나은행(‘칸서스연료전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로서))

[노을그린에너지(주) 재무상태표] 주1)

(단위: 원)

과목	제 3(당)기 주2)	제 2(전)기
	2016.12.31	2015.12.31
자산	**115,018,357,515**	**1,452,027,565**
Ⅰ.유동자산	4,870,632,611	775,016,988
(1)당좌자산	2,618,268,854	775,016,988
현금및현금성자산	950,983,886	608,343,231
그외	1,667,284,968	166,673,757
(2)재고자산	2,252,363,757	0
제품	2,252,363,757	0
Ⅱ.비유동자산	110,147,724,904	677,010,577
(1)유형자산	106,309,568,880	672,943,492
구축물	5,237,893,303	0
기계장치	101,017,692,286	0
비품	53,983,291	19,066,940
건설중인자산	0	653,876,552
(2)무형자산	3,077,055,474	4,067,085
소프트웨어	236,909,279	4,067,085
사용수익기부자산	2,840,146,195	0
(3)기타비유동자산	761,100,550	0
부채	**110,822,410,485**	**41,316,015**
Ⅰ.유동부채	8,538,881,043	19,206,536
미지급금 등	7,475,881,043	19,206,536
유동성장기부채	1,063,000,000	0
Ⅱ.비유동부채	102,283,529,442	22,109,479
장기차입금	102,237,000,000	0
그외	46,529,442	22,109,479
자본	**4,195,947,030**	**1,410,711,550**
Ⅰ.자본금	6,000,000,000	2,000,000,000
Ⅱ.자본조정(주식할인발행차금)	(74,868,000)	(15,316,000)
Ⅲ.결손금	1,729,184,970	573,972,450
부채및자본총계	**115,018,357,515**	**1,452,027,565**

주1) 출처 : 사업시행법인의 감사보고서

주2) 사업시행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승인 이전 상태임

[사업 관련자 개요]

관련자	역할	내용	신용등급
서울특별시	관계관청	사업대상부지 제공, 인·허가 지원	-
한국전력거래소	전력매입기관	사업시행자 생산 전력 전량 SMP로 매입	-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수기관, 발생열 수용기관	사업시행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입, 발생열 매입	회사채AAA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수기관	사업시행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입	회사채AAA
서울도시가스(주)	연료공급기관	사업시행자의 연료공급기관	회사채A+
포스코에너지(주)	시공사 및 관리운영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수기관	책임준공, 전기출력량/연료소모량/열출력량 보증, 책임운영, 사업시행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입	회사채AA-
(주)하나은행	대출채권매도인	노을그린에너지(주)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보유한 대출채권을 이 투자신탁에게 매도	회사채AAA
칸서스연료전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발전시설) {신탁업자: (주)하나은행}	채무자의 주주, 대주	2016.05.12 설정되어 채무자의 주주(재무적투자자) 및 대주로 참여 중임 2017년 1월 19일 현재 출자금액: 18.6억원 출자 완료 2017년 1월 19일 현재 대출채권 편입 금액: 총 961.40억원 약정 중 84,876.36백만원 편입	-
농협은행(주)	대출채권 매입약정기관	이 투자신탁이 (주)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중에,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투자신탁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	회사채AAA

[사업지 개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인	소재지	사용기간	신용등급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84(상암동 481-6) 소재 6,805.86m^2	준공 후 20년간. 단,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시 사용인이 부지사용 허가조건을 신의성실에 따라 충실히 준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함	-

[투자구조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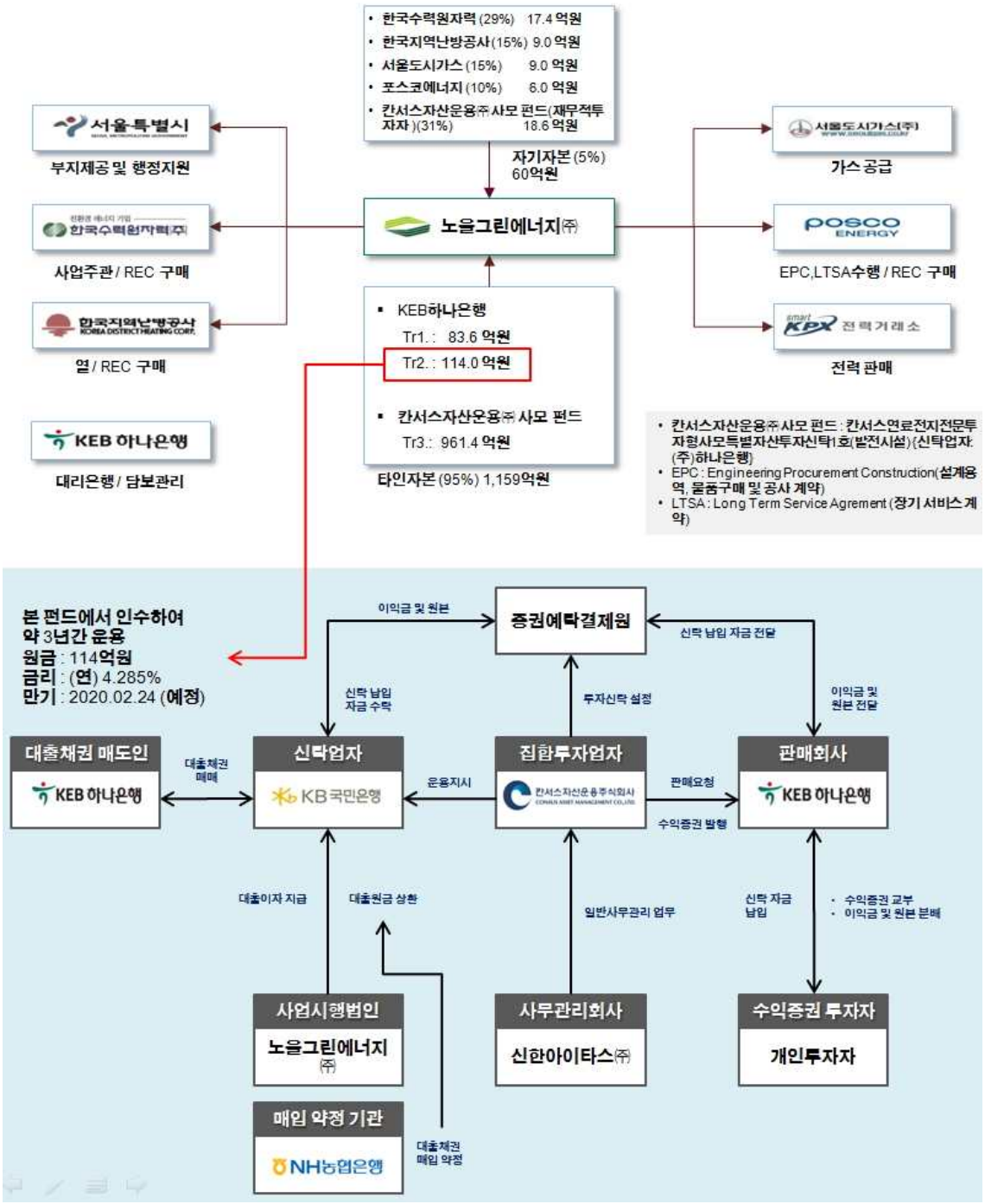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에 대한 설명

이 투자신탁은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비교지수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비교지수의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투자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 정기결산 또는 임시결산을 통해 이익분배금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을그린에너지주식회사의 대내외적인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금흐름의 악화, 과세당국에 의한 세금 발생 및(혹은) 시설의 물리적 파손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2부 내용 중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편입하려고 하는 주요 투자대상자산은 (주)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입니다. (주)하나은행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입니다. (주)하나은행은 대출채권 보유자 이면서 판매회사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주)하나은행이 대출채권 매도시점에 대출채권이 상환 되지 않을 위험을 알고도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매각하고 다시 판매회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관련 위험을 전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채무자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대금, 열판매대금 등을 고려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농협은행(주)과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통하여 상환위험을 감소 시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대출채권을 매입 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합니다. 대출채권의 가치는 해당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율 등에 연동하여 변동하므로 그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대출채권 포함), 단기금융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의 주요 계약당사자인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대출채권 포함)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리금 지급불능 또는 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주)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1년 마다 결산을 통해 이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을그린에너지(주)의 대내외적인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금흐름의 악화, 과세당국에 의한 세금 발생 및 (혹은) 시설의 물리적 파손 등으로 인해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및 관리운영사 신용위험	시공사이자 관리운영사인 포스코에너지(주)는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상 의무 및 '장기 서비스 계약서'상 의무, 그리고 하자 담보 및 전기출력량, 연료소모량, 열 출력량에 대한 보증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 또는 목표예상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수행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각종 사유(사업자 귀책, 정치적 및 비정치적 불가항력, 정부귀책 등)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가 해지되는 경우 또는 각종 사유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의 계약당사자 등이 파산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투자신탁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채권은 조기에 상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법률적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의 주요 사업은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노을그린에너지(주)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므로 채무자의 영업 등에 관련된 법규, 세제 등의 변화가 분배금 및 원금 지급 재원이 되는 전력판매매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매출, 열판매매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로 인해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본 사업 진행을 위한 허가와 승인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거나 취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허가 및 승인 취소 등 관련 중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포스코에너지(주) 등과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이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는 계약 금액에 대하여 확정가격으로 체결되었으나, 건설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영개시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포스코에너지(주) 등과의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를 통해 준공후검사 등을 실시한 후 최종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나, 해당 업무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운영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증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포스코에너지(주)와 확정가액으로 5년 단위로 사업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한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장기 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만약 포스코에너지(주)가 여하한 사유로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체 관리운영사를 선임하게 되면 당초 책정된 서비스 대가보다 초과된 가격으로 '장기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이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할 위험은 있습니다.
연료공급 위험	본 사업 연료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주)는 약 30년간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본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와 '도시가스 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서상 공급자(서울도시가스(주))의 귀책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하였으나, 그럼에도 발전소에 연료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된 연료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연료비 가격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운영하는 연료전지 발전소에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향후 LNG가격의 상승 또는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술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를 통해 포스코에너지(주)로 하여금 연료전지 설비에 대해 각 부문별 평균적으로 약 3.5년간(주기기 기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료전지 설비의 성능이 예상보다 낮게 발생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환경 및 민원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운영하는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 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발생 등에 따른 환경 규제 및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운영기간 발전량 감소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량(전기출력량, 연료소모량, 열 출력량)에 대해 포스코에너지(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만약 실제 발전량이 극히 적은 상황이 지속되거나, 포스코에너지(주)에서 해당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수입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미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지급단가를 산정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매수인인 한국수력원자력(주)(58%), 한국지역난방공사(32%) 및 포스코에너지(주)(10%)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매도할 계획이나, 매수인들의 신용 위험 발생 등의 사유로 매수인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은 존속합니다. 또한, '열수급계약서'를 체결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용 위험 등의 사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해당 계약을 미이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주)와 '도시가스 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신용위험 발생 등의 사유로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주)와 체결한 '설계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서' 및 '장기 서비스 계약서' 관련하여서도 향후 신용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포스코에너지(주)에서 해당 계약을 미이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력구매가격 및 열구매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구매가격인 SMP가 사업계획보다 하락할 경우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채무자에게 지불하는 열구매가격이 사업계획보다 하락할 경우 채무자의 매출이 하락할 위험이 발생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지급단가에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매매대금을 통해 최대한 보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한 발전량 감소위험 및 계약미이행위험 등으로 인하여 전력구매가격 및 열구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출 하락 위험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사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의 채무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업부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상 사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매입약정 체결 은행의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협은행(주)와 대출채권 매입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만약 농협은행(주)의 신용도가 추후 하락하거나, 매입 약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이 상환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이 영위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시설물 등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상당수의 위험은 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를 경감시키지만, 보험을 통하여 보장되지 않는 리스크에 의해 시설물이 일부, 혹은 전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목표예상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및 상환연기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기간 만기 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자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없거나 상환되지 못하면 투자신탁이 상환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년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화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매년 단위로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결국 만기 시점에 투자자가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만기에 일시로 분배금과 상환금을 지급받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매년 분배하는 분배금은 예금의 이자와 다르며,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이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

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금지형 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만기시까지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해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하고 있으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매매시 가격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상장될 경우 풍부하지 못한 거래량으로 유동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AAA(2017.1월 기준)인 농협은행(주)가 대출채권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위험등급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위험등급분류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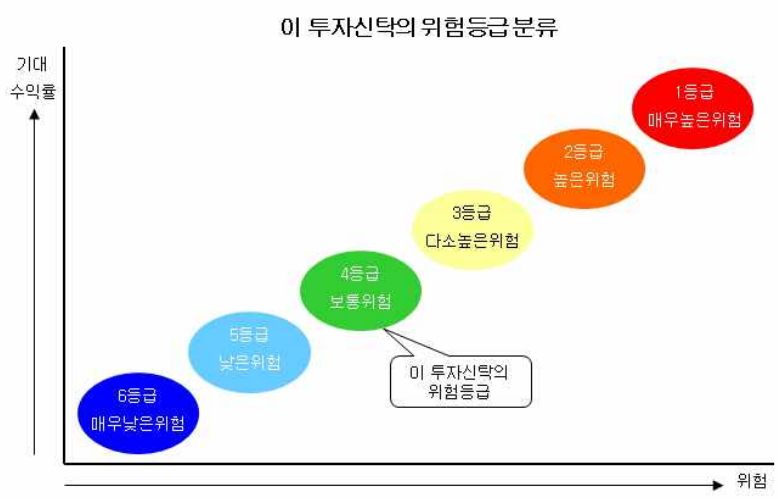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 등급	분류 기준	상세설명 주1)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Act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주2)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Pass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주2)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주2)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주3)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BBB-/A3 등급편입 가능한 채권형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5)부동산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사업시행목적을 위한 회사에 지분증권 투자 및 담보물이 충분치 않은 대여투자, 단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에서 판단함.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주4)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A-/A2- 이상 등급편입 가능한 채권형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5)부동산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사업시행목적을 위한 회사에 충분한 담보(투자금액의 100% 이상)가 존재하는 대여투자, 단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에서 판단함.
6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2) 고위험자산 : 주식,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REITs, Commodity 파생상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주5)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주된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투자구조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서 최초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정 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①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②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폐쇄형)으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하고 있으나, 상장된 수익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수익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군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투자대상자산	평가방법
대출채권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31%	회계기간 종료후, 해지시
판매회사 보수	연 0.33%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기타비용	-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연 0.70%	-
증권 거래비용	00.00%	사유발생시

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합니다.(이 투자신탁의 경우 신규설정으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보수 및 비용	71	223	-	-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4%,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만기가 2020년 03월 31일까지로 5년 및 10년의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투자신탁재산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신탁재산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중 대출채권 등과 관련한 각종 자문비용(법률, 회계 및 금융자문 등) 및 대출채권인수를 위한 대출채권인수수수료
10.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보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해지 이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해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가 추가 발생 시 해지 전 업무를 수행했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투자신탁 해지 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성과(이하 “이익분배금” 이라 합니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이하 “이익초과분배금” 이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의 익영업일
3. 분배금액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또는 이익초과분배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④신탁계약서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채권의 매각(일부매각을 포함), 조기상환, 대출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령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내 잉여현금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 임시결산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수익자는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없다.

(3)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대출채권의 중도상환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상환금 등의 일부상환이 가능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1)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2)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외국납부세액×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과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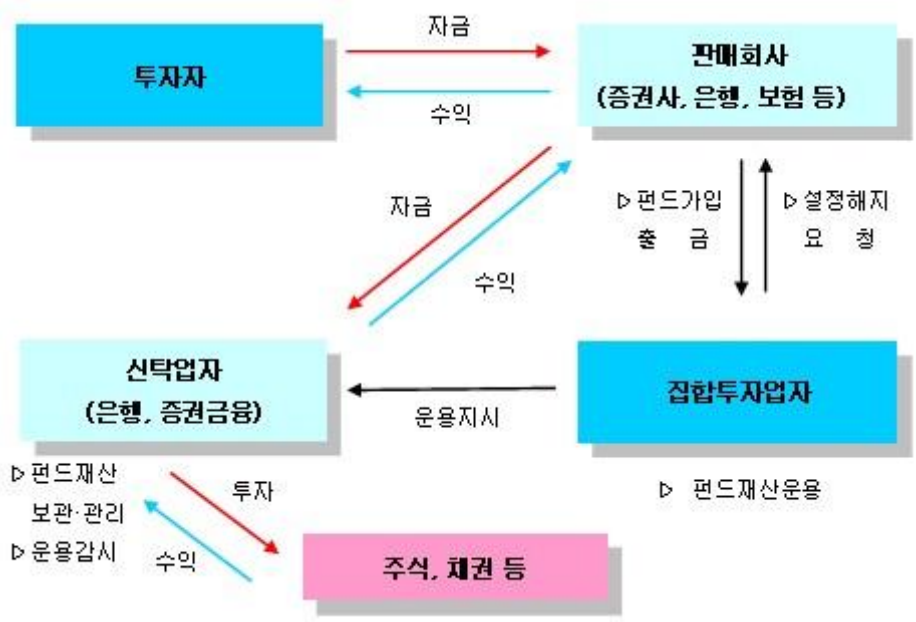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8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회사 연혁	2004.05.10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 2004.09.1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4.10.13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주식형펀드 출시 2005.12.30 금융감독원 선정, 2005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상 수상 2006.01.30 한경Business 선정, 2005년 주식형 Best 운용회사 2007.01.31 2007 대한민국 펀드대상 운용사 부문(주식형 펀드운용) 2007.08.02 대한민국 최초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 2007.09.20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국내 Active주식형부문) 2008.06.27 대한민국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 2009.02.04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2009.12.14 국제투자 성과기준(GIPS) 인증 2010.03.12 KDB Consus Value PEF 설립 2010.12.14 칸서스인베스트먼트3호 “메디슨 등” 삼성전자에 매각 2011.08.25. 한국증권금융 위탁운용사 선정 (주식형) 2012.01.27 2011 더벨 주관 ‘BEST M&A Seller/PE부문’ 수상
자본금	187.0억
주주현황	한일시멘트, 임직원 등 기타개인, 우리사주조합, 군인공제회, KDB생명, KDB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보성산업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①집합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16.3.31	'15.3.31	항목	'16.3.31	'15.3.31
유동자산	8,683	13,713	영업수익	11,903	22,581
고정자산	32,716	26,134	영업비용	10,533	16,781
자산총계	41,399	39,846	영업이익	1,370	5,799
유동부채	1,234	5,415	영업외수익	1,502	159
고정부채	6,500	0	영업외비용	1,285	406
부채총계	7,734	5,415	경상이익	1,587	5,552
자본금	18,702	18,702	특별손익	-	-
자본/이익잉여금	11,160	11,160	세전순이익	1,587	5,552
자본조정	7	66	법인세비용	436	1,29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54	-5,161	당기순이익	1,151	4,259
자본총계	33,665	34,431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2017.01.20/단위:억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	투자일임	총계
형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유형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부동산				회사(PEF)		
운용자산	1,135	4,260	1,150	1,703	3,001	21,341	26	21	10,520	1,385	44,54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 ☏ 02-2073-7114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행위 또는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①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 02-2168-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02-782-10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5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kr	www.nicepni.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상법 제36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 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5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합니다.

마. 재판관할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②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합니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신탁계약서 제23조제4항 각 호의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주식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table>
<tr><td>및
주식관련파생상품</td><td>
<table>
<tr><td>평가항목</td><td>세미나, 기업탐방</td><td>조사자료의 질</td><td>정보 및 리서치능력</td><td>중계 수수료</td><td>주문체결 능력</td><td>중개서비스 문제해결/기타</td><td>합계/ 순위</td></tr>
<tr><td>항목가중치</td><td>30%</td><td>10%</td><td>30%</td><td>5%</td><td>15%</td><td>1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각각 1~5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등급구분은 상위 합산점수기준으로 S~C 등급은 각각 4개사로 하며, 나머지는 D등급
* 각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S(각 11%), A(각 7%), B(각 6%), C(각 5%), D(각 3%)를 원칙으로 함
</td></tr>
<tr><td>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td><td>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table>
<tr><td>평가항목</td><td>조사자료의 질</td><td>거래체결 능력</td><td>거래 용이성</td><td>시장판단 대처능력</td><td>기타서비스(성실성, 당사와의 관계)</td><td>세미나</td><td>합계/ 순위</td></tr>
<tr><td>배점</td><td>15%</td><td>20%</td><td>15%</td><td>15%</td><td>15%</td><td>2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0~평가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합산기준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채권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
</td></tr>
</tabl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특별자산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금전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

	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금전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서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수익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출채권	채무자에의 대출을 표시한 채권을 의미하며 해당 대출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polio Standards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발생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자체조달, 외부조달 또는 인증서 구매 등으로 확보하여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단위를 부여함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원/kWh)